

제20.1호

행정명령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전파 지속으로 인한 뉴욕주 전역의 재난 비상 사태 지속 선포

원숭이두창 바이러스가 2022년 7월 23일을 기해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및 바이러스가 인체에 미치는 피해로 인해 2022년 7월 28일을 기해 뉴욕주 보건 커미셔너가 원숭이두창 바이러스를 공중 보건에 대한 즉각적인 위해(Imminent Threat to Public Health)로 선포했기 **때문에,**

뉴욕이 2022년 8월 26일 현재 기준 뉴욕주에 보고된 확진자 3124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염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역 보건부가 조사 지원, 접촉자 확인 및 관찰, 노출된 접촉자 및 현재 고위험군에 백신 접종, 교육, 봉사 등을 통해 원숭이두창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뉴욕주 정부는 원숭이두창에 대한 예방접종 및 테스트를 용이하게 하고 시행하며 질병이 이러한 속도로 계속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각 지자체, 지역, 카운티에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Kathy Hochul 본인은 뉴욕주의 주지사로서 뉴욕주 헌법 및 뉴욕주 법령을 기초로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행정명령 제20호에 명시된 주 재난 비상사태를 연장하고 행정명령 제20호까지에 포함된 조항, 조건 및 중지를 2022년 9월 27일까지 계속 연장합니다.

추가로, 주 비상시 법률, 지역법, 조례,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한 법률, 지역법, 조례,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를 일시 정지 또는 개정하기 위해 행정부법(Executive Law) 제2-B조 제29-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다음 법률을 본 행정 명령(Executive Order)일부터 2022년 9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시 정지 또는 개정합니다.

- 필요한 범위까지 보험법(Insurance Law) 3216(i)(17)(E), 3221(l)(8)(E) 및 (F), 및 4303(j)(3)항. (1) 공동부담금, 공동보험금 또한 연간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면역 관련 비용 보장을 의무화하고, 건강보험 네트워크

소속 및 소속 외 기관에서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백신면역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ACIP”)이 권고하는 접종 대상이 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비용 보장 의무화 (2) 면역에 대한 공동부담금, 공동보험금, 연간 공제액 적용 면제하여 건강보험 네트워크 소속 및 소속 외 기관에서 ACIP이 권고하는 접종 대상이 이에 따라 백신을 접종.

- 공동부담금, 공동보험금, 연간 공제액 적용을 면제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까지 보험법 3221(h) 및 (l)(3), 4303(e)(1), (f)(1), (II), 그리고 4328(b)(1). (1) 네트워크 소속 연구소의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진단 (2) 원격 진료를 포함하여 다음의 기관에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진단: 네트워크 소속 의료 서비스 제공자 진료소, 네트워크 소속 응급 진료 센터, 기타 원숭이두창 진단이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 소속 외래 진료 시설, 기타 병원 응급실. 단, 공동부담금, 공동보험금, 연간 공제액 적용은 기타 원숭이두창 후속 진료 및 치료에 대해 적용가능한 정책에 따라 부과될 수 있음. 이러한 진료에는 적법한 입원 치료가 포함됨. 공제는 내부 세액법(Internal Revenue Code) 223(c)(2)항 또는 기타 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정의된 고공제의료보험에 적용될 수 있음.

이천이십이년 팔월 이십팔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이 명령을
발령함.

주지사

주지사 비서